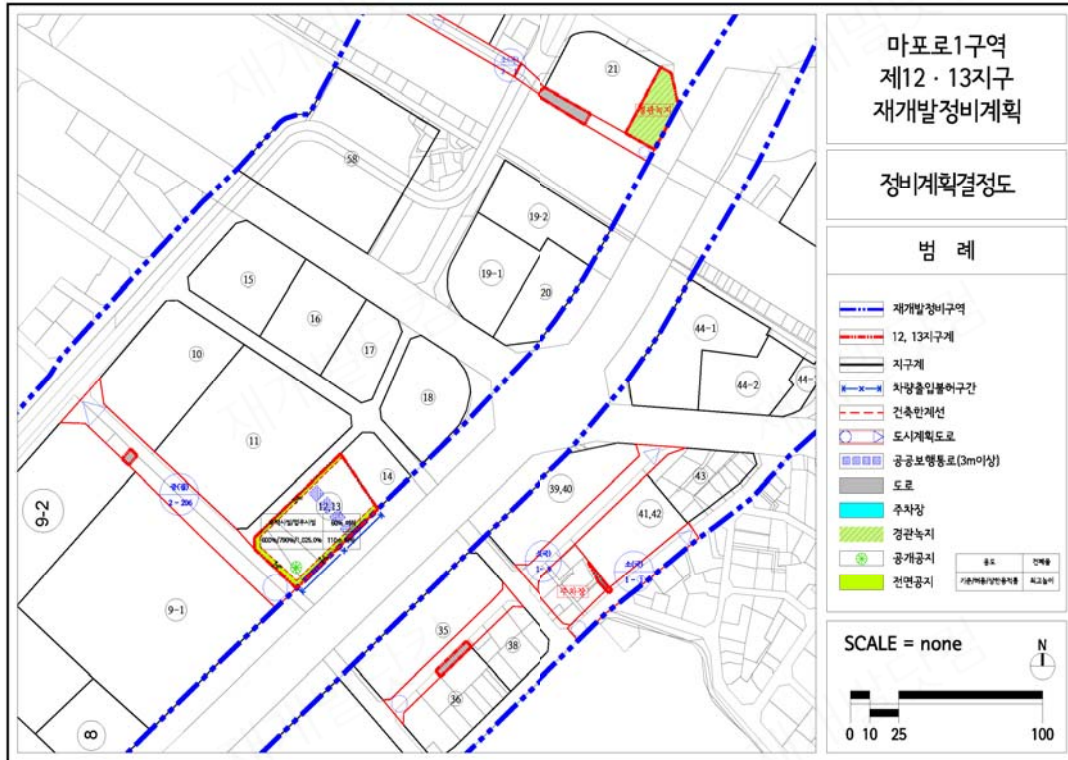


■ 정비계획 결정도



※ 마포로1구역 제12,13지구 내 포함된 정비기반시설만 표현된 사항임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1호

마포로1구역 제34지구 정비구역·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05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(1986.07.23.)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64호(2012.6.28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15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 변경 지정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변경	마포로1구역 제34지구	마포구 도화동 169-1일대	4,551.9	감) 472.9	4,079.0	-

다. 정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4,551.9	감) 472.9	4,079.0	100.00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472.9	감) 472.9	-	-	
	도 로	349.1	감) 349.1	-	-	
	공 원	61.1	감) 61.1	-	-	
	녹 지	62.7	감) 62.7	-	-	
획 지		4,079.0	-	4,079.0	100.00	

2) 용도지역 결정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4,079.0	-	4,079.0	100.0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4,079.0	-	4,079.0	100.0	

3)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

가)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230	15~17	집산 도로	180 (30)	도화동 17번지	공덕동 444번지	일반 도로	-	서고제450호 (77.12.26)	
변경	중로	2	230	15~17	집산 도로	180	도화동 17번지	공덕동 444번지	일반 도로	-		
기정	소로	2	1	6~8	국지 도로	416 (69)	공덕동 435-18번지	염리동 160-31번지	일반 도로	-	서고 제2004-133호 (04.5.15)	
변경	소로	2	1	6~8	국지 도로	416	공덕동 435-18번지	염리동 160-31번지	일반 도로	-		

※ ()는 구역 연접구간 연장임

나) 공원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공덕공원	근린공원	공덕동 255-6일대	1,606.2 (61.1)	- (감 61.1)	1,606.2	건설교통부고시 제146호(80.5.19)	

※ ()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

다) 녹지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공덕제1녹지	경관녹지	공덕동 461-1	630.6 (62.7)	- (감 62.7)	630.6	서울특별시고시 제882호(85.12.28)	

※ ()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

4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마포로1구역 제34지구	4,551.9	획지1	4,079.0	도화동 169-1	숙박 시설	60 이하	1,000 이하	110 이하	
변경	마포로1구역 제34지구	4,079.0	획지1	4,079.0	도화동 169-1	숙박 시설	68.17	497.99	60.45	
기정	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● 건축한계선 : 마포대로변 3m, 이면도로변 2m							
변경			● 없음							

※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 증축 시 정비계획 변경 선행필요

※ 2017년 제2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

: 기 리모델링이 완료된 지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적인 리모델링시 서울시 협의를 선행할 것

2. 변경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는 사항임
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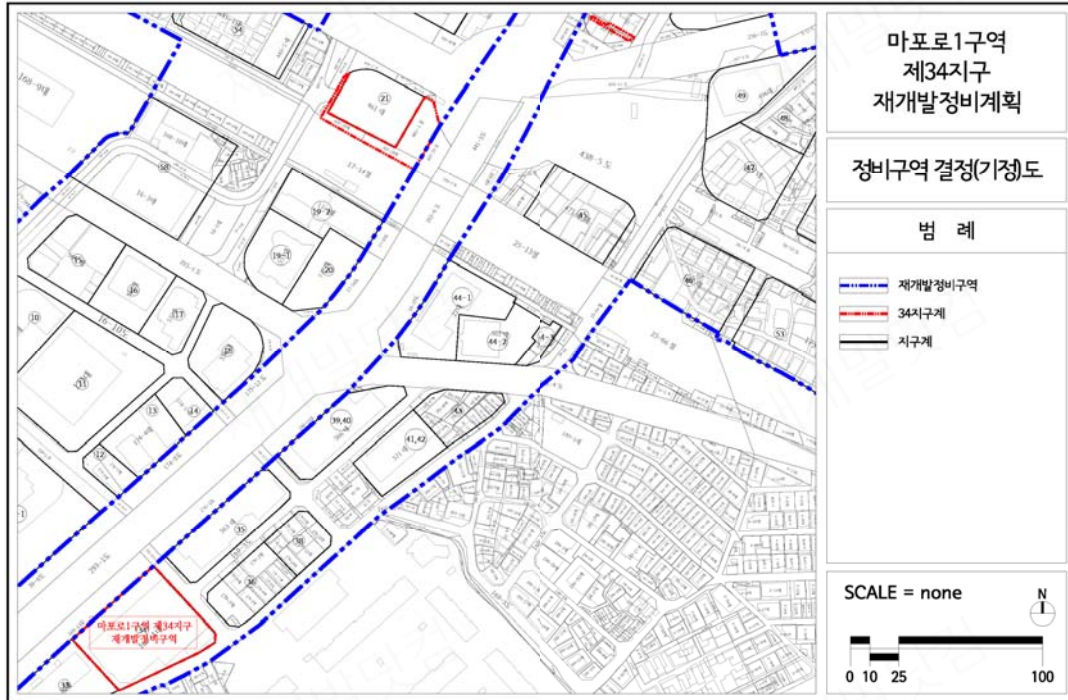
- 정비구역 결정도 및 정비계획결정도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

4. 열람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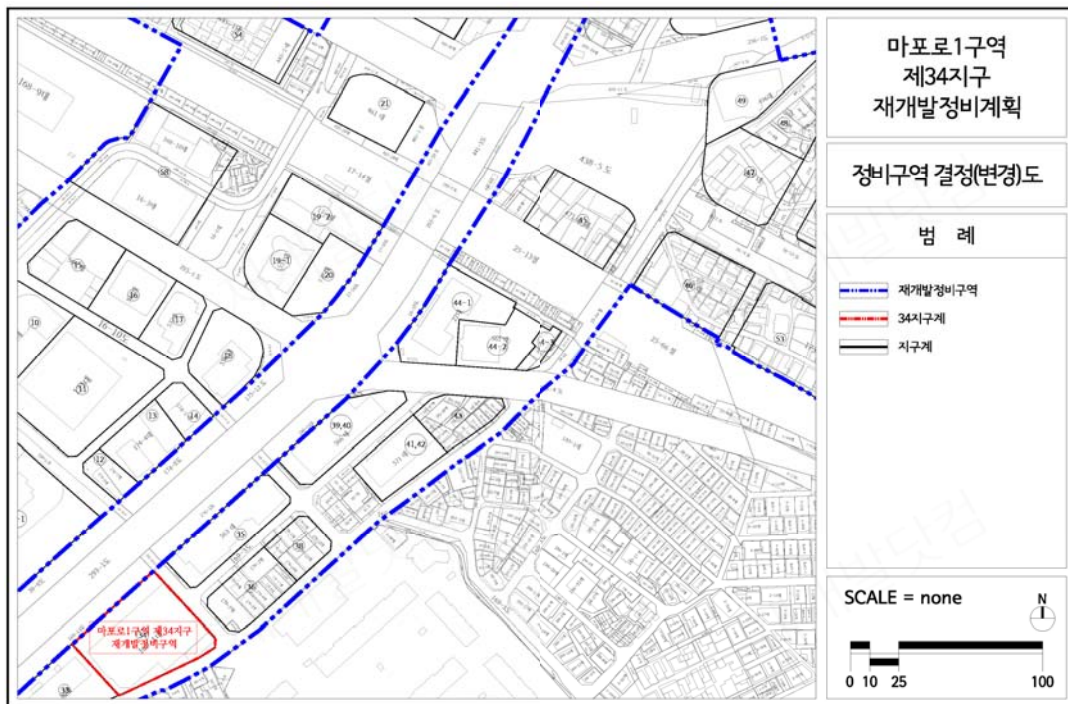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62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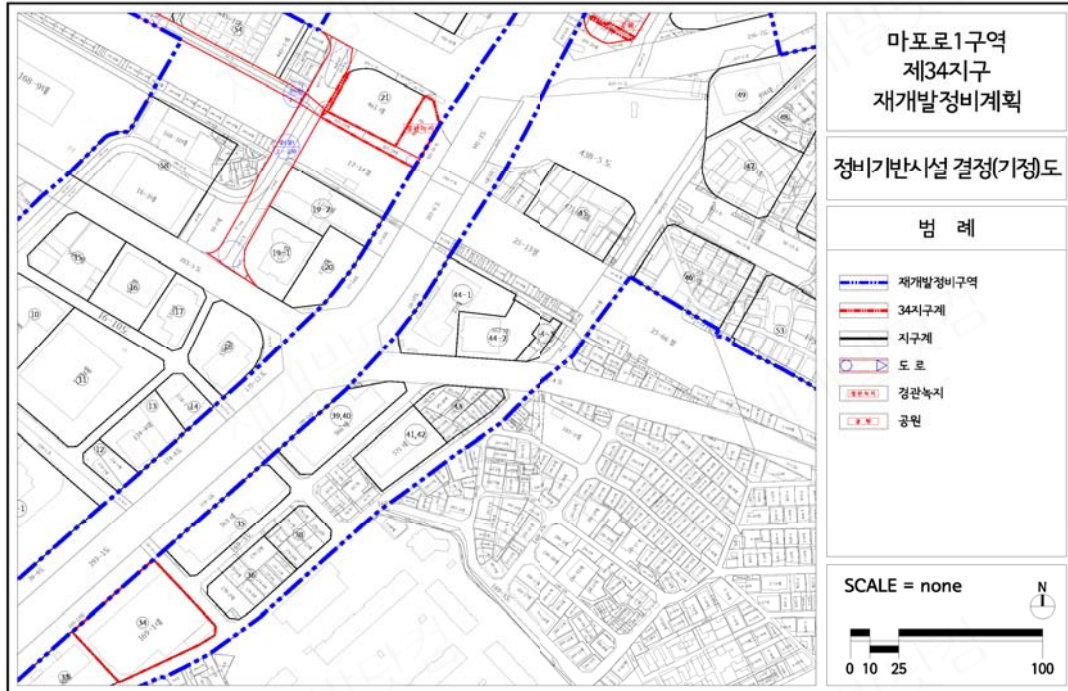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(기정)도



■ 정비구역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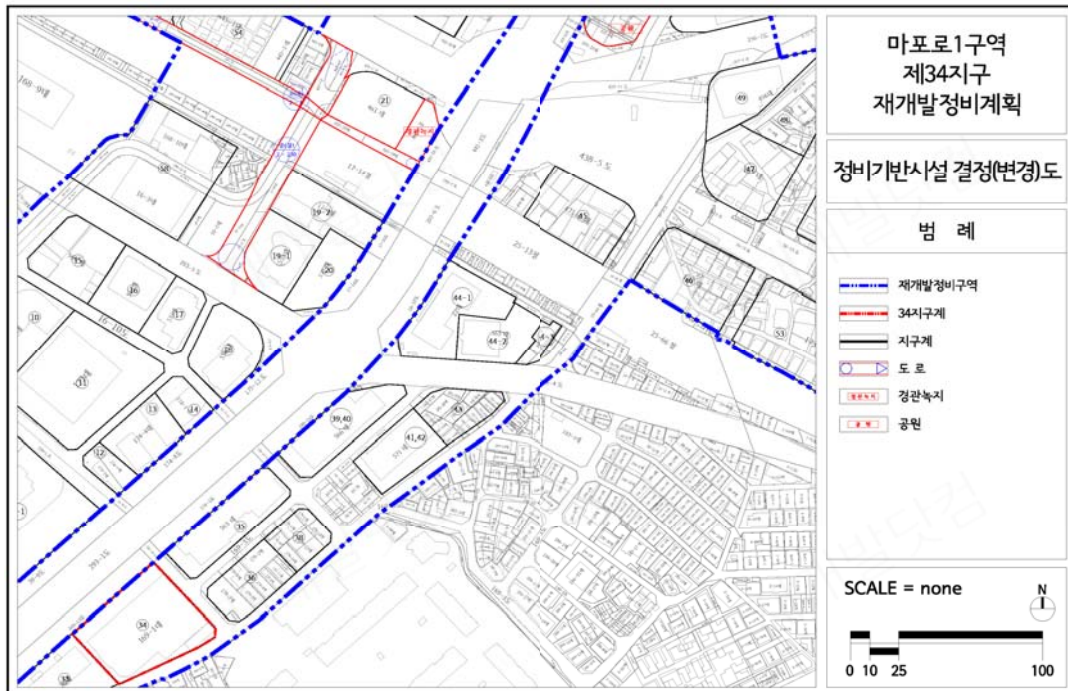


■ 정비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※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내 포함된 정비기반시설만 표현된 사항임

■ 정비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

■ 정비계획 결정(기정)도



■ 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

